

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(제2조제1항 관련)

구 분		위법·부당한 처분 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 무관련자 또는 직 무관련공무원으로 부터 받거나 직무 관 련 공 무 원 에 게 제공한 경우		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 등 재 산상 이익을 받거 나 제공하였으나, 그로 인하여 위법 ·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		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 등 재 산상 이익을 받거 나 제공하고, 그로 인하여 위법·부당 한 처분을 한 경우	
		징계요구 (처리기준)	징계기준	징계요구 (처리기준)	징계기준	징계요구 (처리기준)	징계기준
100 만원 미만	수동	경장계·중장계	강등 ~ 감봉	중장계	해임 ~ 정직	중장계	파면 ~ 강등
	능동	중장계	해임 ~ 정직		파면 ~ 강등		파면 ~ 해임
100만원 이상		중장계	파면 ~ 강등				파면 ~ 해임

※ 비고

1. “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”이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(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말한다.

2. “직무관련자”와 “직무관련공무원”이란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.